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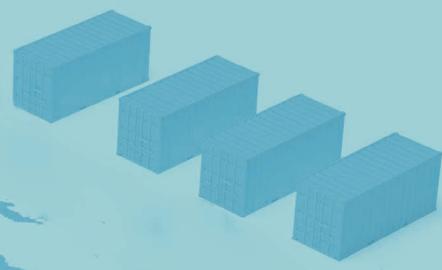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RCEP 발효 대비 수출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사항  
유호곤 | 신대동관세법인 관세사

# RCEP 발효 대비 수출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사항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



유호곤  
신대동관세법인 관세사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발효되면 15개 국가 간 물품 거래가 마치 국내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중 13개 국가와 각각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일본과의 첫 FTA 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1.서론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의 가장 큰 차이는 관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로 물품이 이동될 때는 관세 같은 통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 상하이에서 서울로 물품이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FTA의 가장 큰 효과는 이러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서 국가 간 거래를 마치 운송거리가 상당히 긴 국내 거래처럼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00년대 초부터 논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이 지난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결이 되었다.

하지만 RCEP과 기 체결 FTA는 협정별로 관세를 양허하는 수준이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어 미활용 기업들에게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거나 현재 받는 혜택보다 더 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RCEP 발효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정문이 타결되면 각 국가 내 협정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발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비준절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CEP이 발효되면 15개 국가 간 물품 거래가 마치 국내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중 13개 국가와 각각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일본과의 첫 FTA 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RCEP과 기 체결 FTA는 협정별로 관세를 양허하는 수준이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미활용 기업들에게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거나 현재 받는 혜택보다 더 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RCEP 발효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양허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비교하기

수출자는 현재 기 체결 FTA를 활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RCEP 상의 혜택을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협정의 양허 수준이 0%가 아니라면 RCEP의 양허수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RCEP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하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 체결 FTA와 양허수준이 같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 입장에서 더 관리하기 쉬운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현재 수출품목이 기 체결 FTA의 양허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RCEP 양허표와 양허 스케줄을 확인하고 활용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기업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는 각각 원산지결정기준

RCEP의 양허표를 살펴보면 각 RCEP 회원국 별로 양허표가 있고 각 양허표는 기본적으로 HS CODE별, 발효 1년 차부터 25년 차 이후까지 각 연차별로 양허세율이 기재가 되어 있다.

HS Code	품목명	기준세율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4년 차 (%)	5년 차 (%)	6년 차 (%)	7년 차 (%)	8년 차 (%)	9년 차 (%)	10년 차 (%)
01	제1류 - 살아 있는 동물											
01.01.00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 말											
0101.21.00	-- 번식용	0	0	0	0	0	0	0	0	0	0	0
0101.29.00	-- 기타	5	0	0	0	0	0	0	0	0	0	0
0101.30	- 당나귀											
0101.30.10	-- 번식용	0	0	0	0	0	0	0	0	0	0	0
0101.30.90	-- 기타	5	0	0	0	0	0	0	0	0	0	0
0101.90.00	- 기타	5	0	0	0	0	0	0	0	0	0	0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FTA를 활용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기 이전에 상대국가에서 어떤 HS CODE로 수입통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HS CODE의 분류기준이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분류하는 당사자 또는 국가별로 상이한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수입자와 수출자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는 세율분석과 원산지 판정을 틀리게 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나 RCEP 적용 시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업무를 했을 수 있다.

실제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업들 중 발급까지 마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였으나 HS CODE가 상이하여 정정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어 물류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업무 진행 전 수입자와 HS CODE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입자도 마찬가지로 기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아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RCEP의 특혜세율과 비교하여 RCEP 적용 실익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RCEP과 FTA는 엄연히 다른 협정으로 수출국이 동일하더라도 협정이 다르기 때문에 RCEP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RCEP은 인증수출자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FTA 특혜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RCEP 특혜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혜세율은 수입자에게만 혜택이 있고 수출자에게는 원산지 관리라는 업무만 가중된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출자가 알아서 발급해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수입자가 미리 요청을 해놔야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 등을 준비하여 발효 시부터 즉각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FTA 특혜세율을 처음 적용하는 기업들은 되도록 수출자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적극 협조 조항'을 삽입해두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린다.

'원산지 검증' 또는 '원산지 조사'는 수출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출자가 협조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수출자로 인하여 특혜세율과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조항을 삽입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 3. 누적기준 검토하기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판정 시에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라면 원산지 재료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원산지 판정의 특례조항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누적기준이 RCEP 회원국 15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상징적인 조항인 동시에 기 체결 FTA에 비교하여 RCEP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누적기준은 협정문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한국산이 아닌 수입 원재료를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라면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표면 연마공정만 한국에서 수행하고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거래를 가정한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마가공을 한국에서 수행한 후 뉴질랜드로 수출 시에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나 연마공정으로는 HS CODE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이 철판은 한국산 판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 5%의 관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여야 한다.

RCEP을 적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과 뉴질랜드 모두 RCEP 회원국이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중국산 철판은 곧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한국에서 연마공정만 거쳐 수출되더라도 사용된 원재료가 모두 한국산이기 때문에 수출물품 철판도 한국산 판정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전제조건은 중국에서 수입 시 철판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상항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적기준을 통하여 기존 FTA를 활용할 수 없는 업체에게 활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반제품부터 최종제품까지 공급망 전체에 특혜세율 적용 가능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다만, 발효시점에 모든 회원국의 누적기준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기간 동안 각 회원국 내부적으로 검토를 완료하도록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체 회원국의 누적기준 적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 4. 인증수출자 인증받기/요청하기

RCEP 회원국들의 기 체결된 FTA를 살펴보면 아세안, 중국, 베트남과의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발급 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에 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기관의 검증을 받고 발급된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은 AIR로 수출하는 경우 하루 안에도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된다.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 스스로 서명하여 발급함으로써 신속한 발급 가능의 장점이 있으나 원산지 판정이 정확하게 이뤄졌고 증빙서류를 갖췄는지 라는 안정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RCEP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면서 인증수출자 인증업체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운용되어 안정성과 신속성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다.

RCEP을 활용하려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기관발급 신청 시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정확히 기입이 되어야 한다.



이 양식에 기입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심사기관 입장에서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심사하고 틀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율발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FTA 혜택을 받는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가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도록 종용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FTA특례법상 특혜세율의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적용이 마련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발급되더라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통관

당시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환급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어 실제 환급 시까지는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를 적용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점을 피력하여 수출자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전술한 RCEP 발효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즉 양허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비교하기, 누적기준 검토하기, 인증수출자 인증받기/요청하기 이외에도 수출입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다.

특히, 일본과의 첫 FTA 및 양허품목 확대에 따른 기존 FTA 미활용 기업들에서 RCEP 발효로 원산지 관리업무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관리 업무는 일회성이 아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한 영업, 마케팅, 구매 등과 같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업무이다.

따라서 첫 업무 프로세스 설정이 잘못된다면 원산지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실한 관리로 사후에 원산지 조사 대응 실패로 이어져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RCEP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최초에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완벽한 원산지 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무역 자유화는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전파 경제학부터 연구되었고 WTO 또한 그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국가 간의 비교우위, 정치, 외교, 종교 등의 이유로 전 세계 자유무역은 불가능한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번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이 선언되는 것을 바라보며 EU, NAFTA와 같이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EU와 동아시아 경제가 통합되고 북남미 경제가 통합되어 결국 전 세계 자유무역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